

선 람	기관의 장



제 607 호

2004년 12월 17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25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26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5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09호(인천광역시남동구출장통제규정중개정규칙) 16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10호(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칙) 19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11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중개정규칙) 2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2호(2005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시행공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3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4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5호(체비지매각공고)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6호(체비지매각공고)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29호((긴급)공사입찰공고)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31호(불용물품(관용차)매각입찰공고)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33호(유기동물보호공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834호((긴급)용역입찰공고) 38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2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관련 별표1의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내지 제62호를 제6호 내지 제61호로 하며, 총무과 분장사무 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호 내지 제94호를 제16호 내지
제95호로 한다

15.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 안 이 유

- 구본청 공무원 관외출장 통제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복무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로 이관 일원화함으로써 과도한 관외출장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관외출장 통제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안제8조 “별첨 1”)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 62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무과 소관 “공무원 관외출장통제관련 사무전결 대상사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 안 이 유

- 구본청 공무원 관외출장 통제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복무 관리담당부서인 총무과로 이관 일원화함으로써 과다한 관외출장 통제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 건설기계 등록관련 사무전결 대상사무를 교통과에 신설하여 사무집행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구본청 공무원 관외출장 통제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
- 건설기계 등록관련 사무전결 대상사무를 교통과에 신설

교통과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실무급	담당급				
1. 교통행정의 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2. 총무계획 수립	기안					○
3.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가.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건축물 일제조사	기안		○			
다. 징수결의	기안		○			
라. 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기안		○			
마. 가산금 조정결의	기안		○			
바. 등기 및 부채, 재산권 등록 촉탁	기안		○			
사. 결손처분	기안		○			
아. 체납처분	기안		○			
자. 감액결의	기안		○			
차. 이의신청 결정	기안		○			
카.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타. 체납액 정리계획	기안		○			
4.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기안			○		
5. 지구교통개선사업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기본조사 및 주민여론 조사	기안			○		
다. 유관기관 협의	기안			○		
라.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마. 공사의 착공과 준공	기안			○		
바.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사.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청 장
	실 무 급	담 당 급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기안			○		
나.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다. 운송사업자 지도·감독 및 교육	기안		○			
라. 운행질서확립 및 지도단속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바.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사.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지도, 점검	기안	○				
아.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 및 훈련계획	기안	○				
자. 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					
차. 자동차운송사업 확인신청	기안	○				
7.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다. 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라. 사업의 휴지 및 폐지	기안		○			
8.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승강장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승강장 관리	기안		○			
9.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기안		○			
나. 사업의 취소	기안	○				
다. 사업등록신청 결격여부 조회	기안	○				
라. 운임, 요금, 운송약관의 인가	기안		○			
마. 공동운수 계약협정 및 변경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청 장
	실 무 급	담 당 급				
바. 사업의 양도 . 양수 및 상속	기안		○			
사.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기안		○			
아. 면허실효 확인	기안		○			
자. 자동차 사용의 정지	기안		○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나. 운임 및 요금수리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라. 사업의 양도 . 양수	기안		○			
마. 약관 및 정관 변경신고	기안		○			
바. 법인의 합병신고	기안		○			
사. 적합화물의 운송신고	기안		○			
11.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 변경	기안		○			
나. 사업의 양도 . 양수	기안		○			
다. 법인의 합병신고	기안		○			
라. 사업개선명령	기안		○			
마. 사업의 휴지 · 폐지신고	기안		○			
바. 사업의 상속신고	기안		○			
12.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무		기안			○	
13. 교통불편신고 및 법규위반처리						
가. 행정처분	기안		○			
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14.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업무						
가.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청 장
	실 무 급	담 당 급				
나. 공동사용 허가	기안		○			
다.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기안		○			
라.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15.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업무						
가. 자동차대여사업 운송개시신고	기안	○				
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기안		○			
다. 자동차대여약관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 허가	기안		○			
마.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 양수	기안		○			
바. 법인 합병 및 상속신고	기안		○			
사. 자동차대여사업 지도 감독	기안		○			
16. 교통량 조사		기안		○		
17. 자동차관리사업(폐차업, 정비업, 매매업) 에 관한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나.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 단속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18.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가. 자진처리 명령	기안		○			
나. 행정처분	기안		○			
19.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단속						
가. 자동차정비명령,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기안		○			
20.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관한 사무						
가. 책임보험가입명령 및 증명서 제시 요구	○					
나.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1. 자동차등록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답 당 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청 장
	실 무 급	담 당 급				
22.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항						
가.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기안		○			
나.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기안		○			
23.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					
나. 자동차 변경등록	○					
다. 자동차 경정등록	○					
라. 자동차 말소등록	○					
마. 자동차 이전등록	○					
바. 자동차 강제 이전등록	기안		○			
사. 자동차 등록증 교부(재교부)	○					
24. 자동차 가압류, 압류등록 및 해제	○					
25. 저당권등록(설정, 이전, 변경, 말소)	○					
26. 자동차등록관련 제증명 발급						
가.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나. 등록관련 증명서 발급	○					
27. 자동차 전산자료 발체처리						
가. 승인대장 관리	○					
나. 일일민원처리 증명서 발급	○					
28.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가. 정기검사기간 경과차량 안내 통지	기안		○			
나. 정기검사기간 경과차량 검사명령	기안		○			
다. 법규위반자(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	기안		○			
라.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처리	○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실무급	담당급				
29.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기안		○			
30.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31. 양도증명서 발급 및 관리	○					
32.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기안		○			
다. 압류등록	기안		○			
라. 압류등록 해제	○					
33.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이륜자동차 신고처리(사용, 변경 폐지)	○					
나. 번호판 재교부, 재봉인 신청처리	○					
다.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라. 번호판 및 봉인 제작의뢰	기안	○				
마. 번호판 및 봉인 수불관리	기안	○				
바. 이륜자동차 정비명령, 운행정지명령	기안		○			
34.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의 착공과 준공	기안			○		
라.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마.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35. 민영노외주차장(설치, 폐지) 통보	기안		○			
36.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기안		○			
37.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한 업무	기안		○			
38. 장 . 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실무급	담당급				
39.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기안		○			
40.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업무						
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제(유관기관 협의)	기안			○		
나. 주정차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안			○		
4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업무		기안			○	
가. 종합계획 수립						
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기안			○		
다.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주차요금 징수	기안		○			
라. 불법주차차량 처리(견인)	○					
42.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업무	기안			○		
43.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업무						
가. 불법주정차단속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불법주정차단속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과태료 징수 계획 수립	기안		○			
라. 과태료 징수 결의	기안		○			
마. 과태료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기안		○			
바. 결손처분 및 감액결의	기안		○			
사. 이의신청 결정	기안		○			
아. 과오납 환불	기안		○			
자. 체납액 정리	기안		○			
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등록 촉탁 및 압류해제		○				
44.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CCTV 설치·운영		기안			○	
가. 기본계획 수립						
나. 무인CCTV 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안		○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실·무·급	담당·급				
라.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마. 무인CCTV 관리 및 운영	기안		○			
45. 불법주정차 민간견인대행에 관한 업무						
가. 계약체결	기안			○		
나. 세입관리 및 수수료 지급	기안			○		
다. 민간대행업체 지도·감독	기안		○			
46.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에 관한 업무						
가. 계약체결		기안		○		
나. 용역비 지급	기안			○		
다. 민간용역업체 지도·감독	기안		○			
47.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기안		○			
48. 버스전용차로구간의 통행위반차량에 대한 인력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49. 건설기계 등록						
가. 건설기계 신규등록	○					
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다. 건설기계 등록이전(전입) 신고	○					
라. 건설기계 등록 자진말소	○					
마.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	기안		○			
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					
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					
5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이전) 및 말소	○					
51. 건설기계 압류 및 가처분등록(변경, 말소)	○					
52. 건설기계 검사 및 점검업무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청 장
	실 무 급	담 당 급				
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	○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최고	기안		○			
다. 건설기계 정비명령	기안		○			
53. 건설기계 차적조회	○					
54. 건설기계 관리법령 위반조치						
가.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창구민원)	○					
나.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	기안		○			
다. 과태료 감액건의 및 이의신청	기안		○			
55. 건설기계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가. 전산기기 및 통신망 유지관리	기안	○				
나. 전산입력자료 출력물 관리	○					
다. 민원사무(전산자료 포함) 일일결산	기안	○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출장통제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2 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0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출장통제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출장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출장전일 12시까지”를 “출장당일 소속상사에게”로 하고
“출장 2일전”을 “출장 2일전 또는 출장계획수립시”로 한다.

제3조제5항중 “각 실·과, 사업소”를 “구본청, 직속기관(보건소), 출장소”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구본청 : 총무과장
2. 직속기관(보건소) : 소장
3. 출장소 : 소장

제4조제1항 관련 “출장통제필인”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각 실·과, 사업소”를 “구본청, 직속기관(보건소), 출장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 안 이 유

○ 구본청 공무원이 2일이상 관외출장 및 산하 하급기관을 지도 방문할 경우 출장통제부서(기획감사실)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출장통제와 복무관리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전체직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 기획감사실의 관외출장 통제업무를 복무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로 이관 일원화하고 출장통제시기를 조정하는 등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구본청의 관외출장 통제업무 담당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조정(안 제3조 제5항 제1호)

○ 관내·외출장 신고시기를 조정

- 관내출장 : 출장전일 12시까지 ⇒ 출장당일 소속상사에게
- 관외출장 : 출장2일전 ⇒ 출장2일전 또는 출장계획 수립시

○ 구산하 관외출장 통제기관중 “사업소 : 사업소장”을 “직속기관(보건소) : 소장”으로 하고 “출장소 : 소장”을 신설(안 제3조제5항 제2호 및 제3호)

○ 지도확인점검기록부 비치기관중 “각실·과, 사업소”를 “구본청, 직속기관(보건소), 출장소”로 조정(안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2 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1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재난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 1호 중 “재난관리에”를 “안전관리에”로 하고 동조 2호 중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관리”를 각각 “안전관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 안 이 유

- 2004. 3. 1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으로서 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변경되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 명칭을 변경코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남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으로 규정 명칭 변경(제명)
-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재난관리법 제9조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2 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1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재난”을 삭제 한다.

제1조 중 “재난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조 중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중 “시·구사고대책본부”를 “시·구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속하는 날 오전”을 “속하는 날”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2004. 3. 1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으로서 종합상황실설치·운영에대한 법적 근거가 변경되고,
- 야간근무 후 오전만 휴식토록한 사항을 당직근무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남동구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으로 규정 명칭 변경(제명)
- 종합상황실설치운영 규정을 “재난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1항”의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오전을 휴무”로한 사항을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로 변경함.
(안 제6조 제4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822호

2005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신청자격 : 구단위 민간사회단체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과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

나. 제외단체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중앙정부, 인천광역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교부 받은 단체
- (2)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사업

- ① 국민화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지역갈등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
- ② 문화시민운동 (예시 : Clean남동운동,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 ③ 투명사회만들기 (예시 : 부정부패추방, 부정불량식품·교통환경사범 척결운동 등)
- ④ 자원봉사 (예시 : 이웃사랑나누기, 남동사랑운동, 자원봉사기반구축, 자원봉사연대 등)
- ⑤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여성인력개발, 모성아동·청소년보호 등)
-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 ⑦ 안전관리·재난구조 (예시 : 안전문화운동, 재해재난방재, 구조봉사활동 등)
- ⑧ 문화·예술·체육 : (예시 : 향토사연구, 학술, 체육진흥, 연극, 무용행사 등)
- ⑨ 구민참여확대 (예시 : 민·관 파트너쉽 개발, 주민자치참여 등)
- ⑩ 기타 구 권장사업으로 구정 참여의 공익사업

※ 제외대상사업

- 보조금 없이 수행이 가능한 사업
- 불요불급한 1회성·소모성행사, 국내외 여행 경비 등

3. 제출서류

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 자기소개서 2부

다. 지원사업계획서 2부

라.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마. 신청단체의 회원명단

※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민간단체법에 의한 등록증 첨부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12. 17(금) ~ 12. 31(금) 15일간 근무 시간내

나.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단체관리 해당부서 또는 총무과

※ 신청서류는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www.namdong.co.kr)

○ 상담전화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총무과 (453-2160)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5. 지원사업 선정방법

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다. 심사결과 통보 :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정 후 단체에서 교부 신청에 따라 지원

나.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완료시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

7.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참고사항

- 사업신청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참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지역에 현저한 공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04 - 823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 공고

건설업등록 자진 반납에 따라 등록 말소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등록말소 사유	말소일자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인천남동 01-22-01	조경열 120111-0202838	(주)청원전시 기획	인천. 남동구, 고전동 313-7	자진반납	2004. 12. 14

2004. 12.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 공고 제2004- 824 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만수하수종말처리장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재결신청전에 대하여 2004. 11. 20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들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4. 12.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2. 사업의종류 : <만수하수종말처리장진입도로개설공사>
3. 재결일자 : 2004. 11. 20
4. 공고기간 : 2004. 12. 15 ~ 12. 30(14일간)
5. 재결서 정본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453-2547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한동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954-13 금한빌 401호
 - 【소유자】 이정순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383 연꽃마을태평(아)102-2203
 - 【관계인】 박임근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
 - 【소유자】 박동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6
 - 【소유자】 심영환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58 오룡마을 107-406
7.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825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 하고자 합니다.

1. 매각재산

○ 총 매각현황 : 도림지구(2필지/ 392㎡)

연번	소재지 (BL-LT)	면적(㎡)	예 정 가 액	비 고
1	22-22	189.5	154,821,000	
2	29-3	202.5	165,442,500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매번호에 의한 필지별 매각)**3. 입찰등록접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공고일로부터 2004. 12. 29 (수) 10:00까지

나. 장 소 :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4.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4. 12. 29 (수) 10:30

나. 장 소 :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5.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구의 물건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매 물건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은행 업무마감시간)까지 수도권지역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남동구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남동구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현금예치증)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마.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8.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우리구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귀속조치됩니다.

다. 계약자의 명의를 낙찰자로 합니다.

9.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토지대금의 4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 2) 위기간 경과 시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까지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시 구비서류

가.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나. 입찰보증금납부확인서(우리구 발급 소정양식)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마. 인감도장(본인 및 위임자)

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2004. 12.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826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1. 매각재산

○ 총 매각현황 : 도림지구(4필지/ 7,799.7㎡)

연번	소 제 지 (BL-LT)	면 적(㎡)	예 정 가 액	비 고
1	37-1	1,475.8	1,497,937,000	
2	37-13	2,275.1	2,309,226,500	
3	37-15	652.2	661,983,000	
4	37-22	3,396.6	3,447,549,000	
계		7,799.7	7,916,695,500	

2. 매각방법 : 순위별 매각(1,2순위-수의계약, 3순위-일반경쟁입찰)**< 1 순 위 >**

가. 대 상 자 : 공동주택부지내 개인소유 토지를 80%이상 매입한 자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2 순 위 >

가. 대상필지

구 분	위	치	대 상 체 비 지
1구간	37블럭	1롯데~4롯데	37블럭 1롯데
2구간	37블럭	5롯데~13롯데, 23롯데	37블럭 13롯데
3구간	37블럭	14롯데~22롯데	37블럭 15롯데, 22롯데

나. 대 상 자 : 각각의 구간내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완료한 자

다. 신청기간 : 1순위 마감일로부터 10일

< 3 순 위 >

가. 대상필지 : 37블럭 1롯데 1,475.8㎡, 13롯데 2,275.1㎡

37블럭 15롯데 352.2㎡, 22롯데 3,396.6㎡

나. 대 상 자 : 토지매입을 원하는 자

다. 신청기간 : 1·2순위 매각 및 사업비현황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

3. 1순위 등록 접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공고일로부터 2005. 1. 4 (화) 17:00까지

나. 장 소 :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4.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매 물건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은행 업무마감시간)까지 수도권지역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현금예치증)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마.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6.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우리구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귀속조치 됩니다.

다. 계약자의 명의를 낙찰자로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토지대금의 4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2) 위 기간 경과시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까지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
계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당 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
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 구가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829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소래포구(항) 정비공사(3단계)

1-2. 공사위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하부 공유수면 일원

1-3. 공사개요 : 전체부지 조성(9,908㎡-2,997평)

1-3-1. 부지조성

- 광장부지 조성면적(A) : 5,588㎡

- 어선 접안대수(계선곡주-10m 간격) : 23개소

-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면적 : 2,590.6㎡)

⇒ 진입도로 : 연장(L) -330.0M , 폭원(B) - 6.0M

⇒ 생태공원(통로BOX)연결도로 : 연장(L) -43.0M ,폭원(B) - 6.0M

- 선착장 : 면적(A)=200㎡, 연장(L) -20.0M ,폭원(B) - 10.0M

- 선양장 : 면적(A)=160㎡, 연장(L) -20.0M ,폭원(B) - 8.0M

- 구조물 설치연장 : 연장(L) - 330.0M

- 표면 배수처리 시설(U형 측구) : 156본

1-3-2. 조경시설 부지공사 (A=1,771㎡)

1-3-3. 기존 시설물 철거 : 무근콘크리트 깨기 등

1-3-4. 부대공 : 1식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1-5. 설계금액 : 1,364,221,000원 [추정가격 1,037,463,637원.

부가세103,746,363원. 관급자재223,011,000원]

※ 기초금액 : 1,141,210,000원 입니다.

1-6.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12월16일(목)09:00 ~ 2004년 12월21일(화) 13:00

1-7.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12월21일(화) 14: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8. 설계서 열람기간 : 2004년 12월16일(목) ~ 2004년12월21일(화) [도시정비과]

1-9.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2-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업체이며,
- 2-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면허 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5-1. 설계금액중 관급액을 제외한 기초금액(1,141,21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하고

- 5-2. 예정가격의 86.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2.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6-3. 적격심사 서류제출

- 6-3-1.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 2004.2.6)제2조제1항6호(추정가격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2003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180.48%, 유동비율 125.98%

7.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후 즉시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8-1.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 (국가종합 전자 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2.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3.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휴일제외)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8-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경리팀 (☎ 453-2210)

2004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831호

불용물품(관용차) 매각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사항

가. 입찰건명 : 관용차량 매각

나. 매각대상 차량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가격 (천원)	연식	주행거리 (km)	기초금액 (원)
2320-0091	화물중형 80나7259	점보타이 탄2.5톤	대	1	10,164	1997	92,622	975,000
2320-0091	화물중형 80나7260	점보타이 탄2.5톤	대	1	10,164	1997	94,278	975,000
2320-0091	화물중형 80나7261	점보타이 탄2.5톤	대	1	10,164	1997	94,357	975,000
2320-0093	특수청소 80나7256	트레이드 전개덤프	대	1	15,047	1997	105,281	1,175,000

2.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현품공람일시 : 2004. 12. 24. 15:00이후(남동구청 체육광장 주차장내)

4.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기한 : 2004. 12. 24. 09:00 ~ 12. 27. 17:00

나. 입찰(개찰)일시 : 2004. 12. 28. 14:00

다. 입찰(개찰)장소 : 남동구청 5층 경영재정과 사무실

5.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자

6.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시**

- ①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 1부.
- ③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1부.
- ⑤ 입찰보증금은 면제

나. 입찰(개찰)시

- ①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 ③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6.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의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매각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낙찰을 취소합니다.

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물인수 및 명의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 차량등록에 따른 제반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매각물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경영재정과(T.453-2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833호

유 기 동 물 보 호 공 고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4. 12. 16. ~ 2005. 1. 15.(1개월간)

2. 보호중인 유기동물

연번	종 류	성별	추정 연령	체중 (kg)	발견장소	포획일시	외형상 건강상태	비고
291	개 (닥스훈트)	암컷	2년	6	간석4동 간석5거리	2004.12.7	양호	
292	개 (코카스페니얼)	암컷	1년	8	수산동 수산마을입구	2004.12.10	양호	
294	개 (요크셔테리어)	암컷	7년	4	만수1동 BYC앞	2004.12.10	양호	

3. 반환청구기간 : 2005. 1. 15일까지

4. 참고 및 기타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남동구청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애호가 및 단체에 기증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453-253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04 - 834호

(긴급)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주차장부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2,161톤, 건설폐기물 311톤
- 용역금액 : 56,488,000원(백단위이하 절사)
(추정가격 43,702,500원 부가세 4,370,250원, 건설(매립)폐기물처리비 8,415,660원)
- ※ 기초금액 : 48,072,750원 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12.20(월) 09:00 ~ 2004.12.22(수) 10:00
-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12.22(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4.12.20(월) ~ 2004.12.22(수)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인천,서울,경기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2004.12.22(수) 10: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 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가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설계금액중 건설(대립)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기초금액(48,072,75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토록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7.745%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7호(2004.2.6)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후 즉시 통보**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